경산하양 금호어울림(경산하양지구 A6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 내 “Ⅰ.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중 6. 추가선택품목 2) 가전류 하이브리드 쿡탑 모델명 오기 수정 되었습니다.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하양 택지지구내 A6BL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626세대 (전용면적 59㎡A형 327세대, B형 133세대, C형 54세대, D형 112세대)

경산하양 금호어울림 분양 상담전화 (053-811-0626)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지로서 전용면적 60㎡이하 국민 주택으로 구성된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8.20(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0001004이며, 공고문은 경산하양 금호어울림 홈페이지(www.hykhap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주택전시관)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사전 예약자(일일출입인원제한)에 한해 계약 전 주택전시관 관람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35-5번지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경산하양 금호어울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 「경산시 고시」제2017-52호에 의거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상 경산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2020.05.20. 이전)가 경산시 3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경산시 3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 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 ’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1년 적용, 거주의무기간은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 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일정 안내

공 고	접 수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 약
	기관추천·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현장
8.20(목)	9.07(월) (08:00~17:30)	9.08(화) (08:00~17:30)	9.09(수) (08:00~17:30)	9.15(화)	9.16(수)~9.25(금) (10:00~17:00)	10.06(화)~10.08(목) (10:00~16:00)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모바일앱					경산하양 금호어울림 주택전시관 *코로나-19로 일정 및 장소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추후 개별공지 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년 6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4년 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년 9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 2017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당첨사실 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 불가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순위별 청약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처리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Ⅰ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아파트 지상 20~29층 5개동 전용면적 60㎡이하 626세대 (일반공급 128세대, 특별공급 498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급면적 주거 전용	공급면적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지 하 주차장	계약 면적 (계)	공유 대지 면적 (㎡)	공급세대수 계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국가 유공자	기관 추천	일반 공급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A6	합 계									626	62	187	125	31	31	62	128			
	59.9300A	59A	확장	59.9300	19.3475	6.2370	34.9656	120.4801	34.6652	327	33	98	65	16	16	33	66	29	10	'23.01
	59.9100B	59B	확장	59.9100	19.3410	6.2350	34.9540	120.4400	34.6536	133	13	40	27	7	7	13	26	29	4	
	59.9200C	59C	확장	59.9200	19.3442	6.2360	34.9598	120.4600	34.6594	54	5	16	11	3	3	5	11	29	-	
	59.9300D	59D	확장	59.9300	19.3475	6.2370	34.9656	120.4801	34.6652	112	11	33	22	5	5	11	25	29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 금액 별도)

[단위 : 원]

주택형	층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계약시	계약금 (10%) 계약 후 1개월	중도금 (60%) '21.02.10	'21.06.10	'21.10.11	'22.02.10	'22.06.10	'22.10.10	잔금 (30%) 입주시(2023.01) -	잔금 (30%) 입주시(2023.01)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59.9300A	1층	205,000,000	10,000,000	1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20,500,000	6,500,000	55,000,000
	2층	209,500,000	10,000,000	10,950,000	20,950,000	20,950,000	20,950,000	20,950,000	20,950,000	20,950,000	7,850,000	55,000,000
	3층	214,000,000	10,000,000	11,4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9,200,000	55,000,000
	4층	218,500,000	10,000,000	11,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10,550,000	55,000,000
	5~15층	223,000,000	10,000,000	1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11,900,000	55,000,000
	16~최상층	225,300,000	10,000,000	12,530,000	22,530,000	22,530,000	22,530,000	22,530,000	22,530,000	22,530,000	12,590,000	55,000,000

59.9100B	1층	204,900,000	10,000,000	10,490,000	20,490,000	20,490,000	20,490,000	20,490,000	20,490,000	20,490,000	6,470,000	55,000,000
	2층	209,400,000	10,000,000	10,940,000	20,940,000	20,940,000	20,940,000	20,940,000	20,940,000	20,940,000	7,820,000	55,000,000
	3층	213,900,000	10,000,000	11,390,000	21,390,000	21,390,000	21,390,000	21,390,000	21,390,000	21,390,000	9,170,000	55,000,000
	4층	218,400,000	10,000,000	11,840,000	21,840,000	21,840,000	21,840,000	21,840,000	21,840,000	21,840,000	10,520,000	55,000,000
	5~15층	222,900,000	10,000,000	12,290,000	22,290,000	22,290,000	22,290,000	22,290,000	22,290,000	22,290,000	11,870,000	55,000,000
	16~최상층	225,200,000	10,000,000	12,520,000	22,520,000	22,520,000	22,520,000	22,520,000	22,520,000	22,520,000	12,560,000	55,000,000
59.9200C	3층	209,700,000	10,000,000	10,970,000	20,970,000	20,970,000	20,970,000	20,970,000	20,970,000	20,970,000	7,910,000	55,000,000
	4층	214,100,000	10,000,000	11,410,000	21,410,000	21,410,000	21,410,000	21,410,000	21,410,000	21,410,000	9,230,000	55,000,000
	5~15층	218,500,000	10,000,000	11,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10,550,000	55,000,000
	16~최상층	220,700,000	10,000,000	12,070,000	22,070,000	22,070,000	22,070,000	22,070,000	22,070,000	22,070,000	11,210,000	55,000,000
59.9300D	3층	214,000,000	10,000,000	11,4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9,200,000	55,000,000
	4층	218,500,000	10,000,000	11,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21,850,000	10,550,000	55,000,000
	5~15층	223,000,000	10,000,000	1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11,900,000	55,000,000
	16~최상층	225,300,000	10,000,000	12,530,000	22,530,000	22,530,000	22,530,000	22,530,000	22,530,000	22,530,000	12,590,000	55,000,00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은 사업 주체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사업주체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4. 발코니 확장 금액 (전세대 발코니 확장 시공)

1)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59A	59B	59C	59D
총 확장금액	7,700,000	7,590,000	8,470,000	8,250,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금	농협	317-0020-8659-9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공사계약서에 준함.
- 세대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시 별도 안내예정이오니 ,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세대별 가상계좌는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 바람.)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7동 702호 : '1070702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3)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금액은 아파트 분양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발코니 확장형 세대는 반드시 추가 부담하여야 함.(주택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 계약금 납부)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금액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발코니새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금액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 및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시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시 마감자재 등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면적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함.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할 경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외부에 발코니 창호가 설치되지 않음.
- 계약자의 사용관리상 하자 및 임의 개보수를 제외한 시공상 또는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 발코니 외부창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계약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1의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와 대피시설(하향식 피난구+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의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견본주택 및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새시(PVC이중창)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발코니1, 대피시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음.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상하부 세대 포함)가 기본형(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가구길이 감소,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상·하부세대가 확장일 경우 발코니 천장 및 바닥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 슬라브 레벨, 천장 및 바닥 마감,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 전 외부새시 설치 후 입주하셔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으며 외부새시 미설치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확장형 세대와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마감재, 제공품목 등)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5.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제도가 적용된 주택입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주택형	59A	59B	59C	59D
마이너스 옵션가격	20,068,000	20,074,000	20,189,000	20,032,000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목재문(문틀,포켓도어포함문짝,도어록및경첩등하드웨어일체,문선),PL창호	목재문가틀(사춤및욕실문하부씰제외),발코니내부PL창호(시트지제외), 세대현관방화문및도어록,소방관련방화문
② 바닥	바닥재(마루판,현관바닥타일,현관디딤판등일체),걸레받이,발코니바닥타일, 재료분리대,실외기실,대피공간바닥마감등	바닥난방 +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장식벽(벽지,타일,래핑및벽패널류), 발코니벽도장,주방벽타일(타일붙임몰탈포함),경량벽체,목조칸막이벽등	콘크리트 벽체 위 초배지 마감 또는 기타 부위 석고보드 마감
④ 천장	벽지,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장도장 등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커텐 박스
⑤ 욕실	천정재(천정틀포함),위생기구(양변기,세면기,욕조,샤워기등),액세서리류,수전류, 샤워부스,욕실장,욕실벽및바닥타일(타일붙임몰탈포함),뒷선반,비상콜 (부부욕실),바닥배수구커버,욕실환풍기,비데(부부욕실)등	벽및바닥방수,전기배관및배선,설비배관,배기덕트,욕실바닥난방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시공부위만해당)
⑥ 주방	주방가구(상판포함)및기구(가스쿡탑,레인지후드,음식물탈수기,주방TV폰등),기기류 (액세서리류일체),수전류(절수페달포함),주방벽타일,각종빌트인가전류등	석고보드,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주방배기 덕트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욕실 매입등	전기배관 및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욕실등 제외)
⑧ 일반가구	신발장,현관창고장(도어및시스템선반/해당주택형),화장대(상판및거울포함), 드레스룸장(도어및시스템선반/해당주택형),발코니선반,복도장식장(해당주택형), 복도팬트리(도어및시스템선반/해당주택형)등가구일체	—
⑨ 기타	발코니 수전류, 전동빨래건조대 등	설비배관

■ 마이너스 옵션 설치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선택만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내부에는 분합문이 설치되고 외부에는 PL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품목 중 비상콜 및 주방TV폰은 각 제작자별 독자적인 프로토콜이 설정돼 있어 메인기기인 거실 월패드와의 상호 연동 네트워크를 위해 설치전 월패드 설치담당자와 제조사 선정 문의가 꼭 필요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6. 추가선택 품목

■ 추가선택 품목 계약은 민간참여공동사업 시행자와 고객간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 별개입니다.

■ 추가선택 품목의 계약일정, 계약내용, 옵션비용 납부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 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 품목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	설치위치	금액
전주택형	선택1	거실 + 침실1	3,080,000
	선택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5,170,000

- 상기 천장 시스템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는 옵션 품목과 동일한 삼성전자의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단, 견본주택 설치 시스템에어컨은 냉난방용이나 본 공사시 냉방 전용이 설치됨)되어 있으므로 설치위치, 수량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품의 디자인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은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 은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관련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함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은 제조사별 선택이 불가능하며,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고 주택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배관이 노출 시공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 선택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관련 일체의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여야 함
-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 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계약 전 위치를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실외기 그릴의 색상은 외관을 위해 평형별, 층수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함

2) 가전류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적용 주택형	금액	제조사	모델번호
빌트인 냉장고		전 주택형	6,160,000	삼성	BRS665040SR
			6,710,000	LG	S711SI24B.AKOR
빌트인 김치냉장고	주방가구연장 포함	59A,59C,59D	1,540,000	삼성	RQ22K5L/R01EC

			1,650,000	LG	K221PR14BL.AKOR
	가전수납장 포함	59B	1,760,000	삼성	RQ22K5L/R01EC
			1,870,000	LG	K221PR14BL.AKOR
전기오븐	일반형	전 주택형	330,000	SK매직	EON-B450M
	고급형		660,000		EON-B401SA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1+인덕션2	전 주택형	110,000	쿠첸	CIR-S3216FLBE
	인덕션3		220,000		CIR-IH303DSBI

- 일반 냉장고 수납장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냉장고 배치를 위하여 약 90cm 이상의 폭이 확보되며, 보유하고 계신 냉장고에 따라 약 15cm 이상 돌출될 수 있으며, 일부 대용량 제품은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냉장고 자리 뒷면에는 벽지가 시공되며, 냉장고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 쿡탑 옵션 판매가격은 기존 하이브리드쿡탑(전기2구,가스1구) 설치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옵션 쿡탑 선택 시 기존 하이브리드쿡탑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덕션 3구와 하이브리드쿡탑(전기1+인덕션2)은 세대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누진 전기요금이 부과됩니다.

3) 기타 품목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59A	59B	59C	59D	설치위치	비고
붙박이장		990,000	990,000	1,210,000	990,000	침실3	주택형별 적용 디자인 변경 불가
팬트리		-	-	440,000	-	복도	
다용도수납장	주방가구연장 포함	770,000	-	770,000	770,000	주방	
	가전수납장 포함	-	990,000	-	-		
중문		1,870,000	1,870,000	1,980,000	1,870,000	현관	
엔지니어드스톤		990,000	1,100,000	880,000	990,000	주방벽체	
포세린타일		1,320,000	1,430,000	1,540,000	1,430,000	거실,주방 바닥	

4)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추가선택품목 공사비 납부계좌	농협	317-0020-8659-9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공사계약서에 준함.
- 세대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시 별도 안내예정이오니 ,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세대별 가상계좌는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 바람.)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7동 702호 : '1070702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5)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 등이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별도 계약품목의 사양, 제조사 및 설치 업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인조대리석 등)는 시공 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 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총6차),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드림)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II 신청기준 (무주택, 소득·자산)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0.09.15)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당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용 85㎡ 이하)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공공분양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동일 세대 내 중복 청약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 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 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써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 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0)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용면적 60㎡이하)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 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3">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215,500천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건 물</td><td>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r><td colspan="2">시설물</td><td>지방지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td></tr>
</table>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27,640천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0년식 자동차를 2019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3.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소득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 보장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0)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전용면적 60㎡이하),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554,983원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665,980원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55,729원) 추가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60㎡이하)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주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일반공급(60㎡이하),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1년 미만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직계존속 포함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 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0)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당첨자'로 선정 · 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예비자'로 선정 · 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해당기관(특별공급대상자 추천기관)
경산시청(지자체철거민),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북도청사회복지과(장애인, 다문화가족), 통일부 이산가족가(납북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지능팀 (우수기능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민국체육 유공자), 통일부하나원교육기획부(북한이탈주민), 국방부(10년 이상 복무군인),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공판로지원과(중소기업근로자)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0.09.07)에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 · 호 배정) 및 계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 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14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0) 현재 경산시,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1.08.01 ~ 2020.07.31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 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665,980원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지역(경산시)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지역(경산시)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동일 세대 내 중복 청약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순위(1순위→2순위), ②거주 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분→경산시 3개월 미만→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분), ③"<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④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기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 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경산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0	
		1년 이상~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세대구성(3)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유주택자인 경우 만60세가 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점 불가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0) 현재 경산시,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의 120% 이하인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665,980원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 · 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지역(경산시)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지역(경산시)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동일 세대 내 중복 청약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순위(1순위→2순위), ②거주 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분→경산시 3개월 미만→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분), ③“<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④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0) 현재 경산시,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 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554,983원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지역(경산시)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지역(경산시)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 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동일 세대 내 중복 청약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거주 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분→경산시3개월 미만→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분), ②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 · 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0) 현재 경산시,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554,983원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665,980원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지역(경산시)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지역(경산시)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 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동일 세대 내 중복 청약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동일 순위내 경쟁시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분→경산시에 3개월 미만→거주자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분) ③ 아래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선정 순차(미성년자수→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항 목		기 준	비 고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주택건설지역(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3세 미만)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 1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가. 가구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443,986원	4,981,074	5,550,683	6,075,266	6,599,850	7,124,43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맞벌이)	5,554,983원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 소득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 · 허위임신 ·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다.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 · 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0) 현재 경산시,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나.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공급신청자의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554,983원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초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지역(경산시)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지역(경산시)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세대 내 중복 청약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동일 순위내 경쟁시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분→경산시에 3개월 미만→거주자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분) ③ <표4>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④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4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Ⅱ. 신청기준의「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Ⅳ 신청 시 확인사항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한국감정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조회기준일 입력→공인인증서 인증→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6개월)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 금지,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09.15)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1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분이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을 제외하고는 당첨사실 전산검색 및 재당첨 제한 적용이 배제되며 동 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법 제64조에서 정한 전매제한 기간 중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 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한 날에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 주체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 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3.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 · 장애인 · 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청약홈(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표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 중복 청약 할 경우 당첨사실과 관계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 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 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 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 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사업주체에 방문 또는 유선 ·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14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14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 (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40% 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감정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의 경우 'Ⅱ. 신청 기준'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Ⅴ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0. 9. 07(월) (청약홈인터넷 : 8:00~17:30) (사업주체견본주택: 10:00 ~ 14:00)	인터넷 신청 (PC또는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 1순위	2020. 9.08(화) (8:00 ~ 17:30)	인터넷 신청 (PC또는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2순위	2020. 9.09(수) (8:00 ~ 17:30)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40%를 초과할 경우 다 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오후 8시 이후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모바일앱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Ⅵ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PC인터넷 · 모바일 신청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인터넷 · 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모바일앱 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청약홈"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 저축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당첨자)
2020.09.15(화) 한국감정원 청약홈 및 모바일앱 (www.applyhome.co.kr)	2020.09.16(수) ~ 09.25(금) 10:00~17:00	2020.10.06(화) ~ 10.08(목) 10:00~16:00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경산하양 금호어울림 견본주택 *코로나-19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공고 및 추후 개별공지 할 예정입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ykhapt.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9.15(화) ~ 2020.9.24(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9.15(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 문의전화에는 개별 응답하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사업주체 및 분양주체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 후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0.09.16~2020.09.25)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 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상세" 조건으로 발급)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⑥ 재직증명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⑧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④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상세" 조건으로 발급)
		○	⑤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⑥ 재직증명서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0)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상세" 조건으로 발급)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본인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 수	추가 (해당자)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또는 배우자)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②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상세" 조건으로 발급)
		○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상세" 조건으로 발급)
		○	③ 기본증명서	자녀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⑦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 조건으로 발급)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6>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6>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무통장 입금확인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확인증) ※ 현장 수납 불가 * 입금 계좌번호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금 : 분양주택 공급금액의 10% + 발코니확장 금액의 10%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의 10%(계약시에만)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발급분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③ 본인(계약자) 도장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④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홍보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감정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 · 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 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2.21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 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20.10.06~2020.10.08)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유의사항

■ 지구 여건
• 지구에서 직선거리 1.5km이내에 대구선,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 예정 하양역이 위치하고 있음.
• 지구 남쪽으로 금호강이 위치하며, 남서쪽으로 11km거리에 경산 시청이 위치하고 있음.
• 지구 반경 1.2km 이내에 하주초등학교, 무학중학교, 무학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음.
• 지구 남쪽으로 100m 거리에 공공청사부지가 위치하며, 남동쪽으로 1.2km 이내에 하양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음.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에는 공공분양(626세대)으로만 계획되어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개발 · 실시계획 등의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외부 지구내외 도로 계획 및 선형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방범 및 안전 사유로 대지경계 상 펜스 등 설치될 수 있으며, 보도통행이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저수지가 근접하여 관리 상태에 따라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으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통행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북측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설치 이후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높이와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문화공원,완충녹지 등) 간 레벨차이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공동주택 지상주차장이 인접하여 주차차량으로 인한 매연, 불빛, 소음, 건설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유효높이는 지하1층 2.7m, 지하2층 2.3m임.
• 주차대수는 공동주택 789세대, 근린생활시설 2대로 총 791세대(지상 100대, 지하 691세대)이며,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소음, 전조등은 인접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605동 1호라인의 경우, 1층에 주민공동시설 출입구 및 필로티(2개층)가 위치하며, 2층에는 별도의 실이 설치되지 않음.
• 605동 4호라인의 경우, 지하1층에 관리사무소, 경로당, 방재실 및 MDF실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전동(601동~605동) 지하 1층에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 위치가 조정될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투시도, 이미지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조감도 등에 표현된 외부 색체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단지명칭, 동번호, BI(Brand Identity)로고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입주개시일(잔금완납포함) 이전에는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하며,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계약해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지붕은 평지붕이고,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신청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임.
• 아파트 배치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디자인은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3층이하) 외부마감은 석재, 수성페인트, 석재뿜칠이 시공성과 디자인 등 고려하여 적용되었음.
•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등이 일부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여건 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고층부 입주자는 이사 전 반드시 이사업체에 현장 확인을 통해 사다리차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함.
• 605동 지하에 근린생활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제연팬이 설치되어 장비가동 시 일부 저층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세대 내 설비배관의 점검을 위하여 점검구 또는 점검홀 설치 예정임.

- 세대 내 주방 배기시스템은 옥상 루프팬을 이용한 공용배기 시스템을 적용함.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냉난방기 가동시 일부 세대에서 실외기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통로 공간과 지하층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동일하게 배정되지 않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TV, 벽걸이에어컨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어린이집은 602동 3호,4호라인 1층에 위치하며, 원아모집 및 운영 관련사항은 추후 관계법령 및 입주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예정임.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 PIT층은 지반상황 등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휴게공간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 · 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공사 완료 후 실제 소음도 측정하여 측정치가 예상치 또는 법정 규정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음벽 등 추가 시설물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저층세대는 조망,통풍 등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아파트와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아파트 공용부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의 마감사양은 지하2층 ,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이상 별로 기준이 상이함.
- 소방차전용구역의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현장 여건에 따라 녹지 및 시설설치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공공분양)는 주차대수는 택지지구 교통영향평가 2024년 주차수요 0.79대/세대(60m2이하) 보다 상향되어 세대당 1.26대로 설계되어 있으며, 주차대수 상향을 요구 할 수 없음.(단,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주민카페, 경로당 등),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음.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단지내 전기공급용 개폐기(PAD S/W) 설치로 인하여 미관저해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각동 저층세대는 근린생활 시설과 부대복리시설에 의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 집열판,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 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경관조명, 측면 로고설치 등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1층 세대는 지상 소방차 이동동선,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광장 및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며, 입주민 등의 모임과 활동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605동 지하1층, 지상 1층에는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이 설치되어 저층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 필로티가 있는 주동은 필로티 하부로 출입구가 설치되어 유효높이가 낮아 보일 수 있음
- 자전거 보관대는 필로티 등 설치가 가능한 공간에 우선 설치됨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됨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 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 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 출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됨
- 소방차 정차 및 활동공간, 비상동선구간은 잔디 외의 식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인접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교목식재가 불가하므로 인접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별도의 IP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휴대폰 제어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본아파트는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로 주민공동시설에 장애인용 화장실, 각 동 출입구 경사로, 단지 외부 엘리베이터 등이 계획됨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결로 방지를 위해 제습기가 설치되며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됨.
- 단지 내 제연방식은 승강로를 이용하는 승강로 가압방식이 적용됨(E/V홀에 별도 스모크타워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 각 동 지하주차장에 급, 배기구(DA)가 설치되며 인접세대는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세대용 난방열량계와 급수, 급탕 계량기는 엘리베이터 홀 PD 내부에 설치됨.
- 세대 내 현관에 일괄소등스위치(일괄소등, 가스차단 및 승강기호출 기능 내장)가 설치됨.
-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급배기시설, TOP LIGHT, DA, 발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및 매연,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세대 등 내부 여건

- 605동 1호라인 20~29층 , 발코니1, 거실과 2호라인 침실3, 4호라인 17~25층 침실2, 침실3, 거실, 발코니1은 기본형 타입과 다르게 입면분할창이 설치되며 이 경우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외부 창호는 ASA방식으로 어두운 컬러가 입혀질 예정으로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것과 색은 동일하나 질감과 패턴이 상이할 수 있음.
- 각 주동 1층, 최상층 세대는 기준층보다 천장고가 10cm 더 높게 계획이 되나 창문과 문은 기준층과 동일한 높이로 설치됨.
- 주동 장애인승강기(엘리베이터) 샤프트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1항에 따라 바닥면적(공급면적)에 제외되어 산정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21~29층 규모로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분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일부동은 1,2층 필로티(601동 2호,6호, 602동 1호,3호,4호, 603동 1호, 5호, 604동 1호, 5호 605동 1호,5호)로 시공되어, 인근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1층 및 지상1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및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상업용지,업무용지 와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옥상조경 및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 및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 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아파트 지하층에 설치된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지상에 설치됨.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음.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저수조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인근 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루프팬(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 흡출기(욕실 배기용)가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E/V 승강로 및 기계실과 인접되어 있어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으로 구성되며,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부위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팬룸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남측 주출입구 좌측에 위치함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대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특히 쓰레기분리수거대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 지하주차장 환기탑(DA) 및 채광창, 쓰레기 집하시설과 재활용품 보관소, 자전거보관대는 본공사 과정에서 일부 사양, 디자인, 수량, 위치는 조정될 수도 있으며, 일부동에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조망, 냄새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분양홍보관(견본주택), 팸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성능향상 등을 위해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홍보관(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전시품임)
- 분양홍보관(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분양홍보관(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입주자 부담에 의한 욕실 마감 시 휴지걸이, 급수·급탕 매립박스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추후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세대에는 발코니에 완강기(3층부터 10층까지)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외부창호 형태 및 발코니 문의 재질, 난간대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음.
- 아래층으로 대피가 가능한 하향식 피난구는 바닥 설치 기준으로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는 설치 제외되고,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은 실외기 및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므로 물건을 적재할 수 없으며, 물건 적재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이 불가하고,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 위치 및 제품의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에는 하향식피난구와 실외기 설치공간, 천정에는 환기장치 장비 및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타입의 전열교환기의 위치는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에 따라 층별 교차 시공됨.
-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에는 배수구 및 배수입상관이 노출 설치되나 이는 물이 유입되는 비상시를 위한 시설이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고 방수가 적용되는 실이 아니므로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은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각 실 옵션 선택형에 따라 조명 및 스위치의 설치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고 및 실규격은 시공허용범위 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비확장 발코니는 건식으로 바닥배수가 설치되지 않음.
- 3층에서 10층 세대 발코니에는 완강기가 설치되며 완강기 설치 세대의 침실1 발코니 외부 투시형 난간 높이는 다를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제품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깊이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기본 에어컨이 아닌 추가설치 에어컨은 실외기실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함.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를 설치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함.
- 발코니 혹은 보조주방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 헤드 및 소방용 감지기가 설치됨 (M/H내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 및 소방용 감지기는 견본주택용이며, 본공사 시에는 소방 법규에 맞춰 설치됨)
- 환기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 천장 및 주방가구 상부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양변기는 절수형 양변기를 적용하여 일반양변기에 비해 배출 성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발코니(세탁실)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벽체의 문양과 색상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장 뒷면 및 주방가구 뒷면 벽체 타일은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가구 하부와 후면벽체,천장에는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음
- 주방 아일랜드식탁은 바닥마감 없이 고정되며,모든 옵션평면에 아일랜드식탁 설치 가능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다용도실에 가스배관 및 가스 계량기가 노출 설치되며 본공사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다용도실에 가스 보일러가 설치되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본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실외기실의 경우 비난방공간 임.(욕실내 욕조,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 하부, 주방의 냉장고, 김치냉장고 하부 공간은 바닥 난방 시공 제외.)
- 각실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기구류(콘센트, 조명기구, 환기구 등)의 사양 및 설치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전열교환 환기방식으로 기계환기 설비가 적용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천정에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고,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당 현장의 전열교환기는 H13급 헤파필터가 적용되어 있음)
-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자동소화장치가 가스, 전기 겸용으로 설치되며,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음.
- 하이브리드 쿡탑 옵션 선택시에도 주방 가스 공급용 배관이 기본과 동일하게 설치되며, 상부장 하부에 가스 차단기 설치 후 캡마감 처리됨.
- 근린생활시설(상가) 주변 지상주차장은 2대로 설계되어 있음.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 개인의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집,경로당,피트니스센터,작은도서관,용역원 휴게소,독서실,관리사무소,맘스 스테이션,경비실,계절창고 등이 있으며, 실내가구나 컴퓨터 등 내부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음 (단, 경로당, 보육시설에는 주방가구와 신발장 설치)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세대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임
- 거실 아트월 및 주방벽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정재는 ABS 판넬로 시공되며 천정에 점검구 시공 예정임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함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선반은 각 형별에 따라 폭이 상이할 수 있고, 높이조절·접힘·걸침기능이 가능한 시스템선반이 설치되며 과도한 중량물 사용 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함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공사 시 달라질 수 있음
- 세대 천장고는 기준층 기준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현관중문(선택시 유상옵션)은 본공사 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지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주방가구, 강화합판마루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 함.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욕실로 시공됨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세대내 실내 환기는 전열교환환기시스템을 적용하며, 덕트 및 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일부 발코니에는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주방가구,욕실가구,신발장,침실 붙박이장)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 및 소방용 감지기가 설치됨.(견본주택 내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 및 소방용 감지기는 견본주택용이며, 본 공사시는 소방 법규에 맞춰 설치됨.)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됨.
- 당 현장은 물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세대 수압을 2.5kg/cm2 으로 제한되므로 수압이 약하게 느낄수 있음.
- 양변기는 관련법에 의거 절수형 양변기를 적용하여 일반 양변기에 비해 배출 성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음.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세대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됨. 또한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냉매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의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SKT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용 무선AP 및 연동가전, AI스피커(SKT제품에한함)등은 입주자가 구입, 설치하여야함. (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는 경 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3년간 무상서비스제공 후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델하우스 및 홍보물등에 명시한 IoT관련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동체감지기가 설치 됩니다.(아파트1~2층 및 최상층의 경우는 발코니 및 침실의 창호 측면부등에 각 1개소 설치되며, 기타층은 거실 창호 측면부에 1개소 설치됨)
- 견본주택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침실 문 뒤 벽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위치 및 색온도등이 상이 할 수 있음.
- 아일랜드식탁에 매립형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아일랜드식탁 이동시 사용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통신수구,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져,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605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지내 전파 상태에 따라 지상 녹지구간, 지하주차장 등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601동, 602동, 604동, 605동 옥상 및 지하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지내 전파상태에 따라 지상 녹지구간, 지하주차장 등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추가 설치될 수 있음)(설치 위치는 지역전파 관리소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동통신 중계장치의 설치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업무영역이며, 시공사와 관련이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의 창호 측면부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부 1개소에 설치됨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동은 차량 진·출입 시 경보음 발생과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음
- 601동, 602동, 603동, 604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인접 하부세대에는 조망침해, 미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한전 특고압 PAD/SW 설치로 인접 일부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학교 개교 현황

학교	학교명	주소
초등학교	하주초등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무학로48
중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송로71-11
중학교	하양여자중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8길 21

- 인근 학교 학생배치 여건, 학생 유입 규모, 공동주택 분양공고 상황, 교육부의 학교 설립 승인 심사결과 등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이 변경, 지연, 취소 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설리비전까지는 경산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학생배치가 가능한 학교에 배치됩니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가각 하주초등학교 및 하양중학구(무학중, 하양여중)내 수용 예정입니다.
- 실제 입주시점에는 학생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교육청 등 행정청에 계약전 문의하여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설립으로 인하여 학교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인접 동에 소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주택전시관)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이 필요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 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 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전시관 및 모형은 주택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 뒤에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임.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5.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 용	바닥(층간바닥)	적 용
외벽(직접면)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일괄소등스위치	적 용
창호(직접면)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참호(간접면)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지붕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바닥(직접면)	적 용	고효율설비	적 용
바닥(간접면)	적 용	-	-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27,994,786
			기간이자	416,128
			필요적 경비	41,325
			그 밖의 비용	3,871,800
			계	32,324,039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1,891,736
			흙막이공사	0
			비탈면보호공사	21,416
			옹벽공사	0
			석축공사	17,847
			우·오수공사	528,258
			공동구공사	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42,773
			도로포장공사	478,288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13,563
			정화조시설공사	0
			조경공사	2,260,036
			부대시설공사	1,584,828
			계	6,938,745
		건축	공통가설공사	2,853,126
			가시설물공사	1,495,517
			지정 및 기초공사	0
			철골공사	0
			철근콘크리트 공사	26,231,346
			용접공사	0
			조적공사	1,493,541
			미장공사	2,495,880
			단열공사	0
			방수·방습공사	1,237,050
			목공사	2,620,654
			가구공사	3,961,082
			금속공사	1,177,985
			지붕 및 홈통공사	354,373
			창호공사	5,272,519
			유리공사	742,354
			타일공사	1,759,949
			돌공사	2,152,771
			도장공사	913,859
			도배공사	828,933
			수장공사	1,528,694
			주방용구공사	0
			그 밖의 건축공사	140,613
			계	57,260,246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1,980,685
			급탕설비공사	1,835,737

			오배수설비공사	2,063,202
			위생기구설비공사	1,639,529
			난방설비공사	792,604
			가스설비공사	540,962
			자동제어설비공사	228,399
			특수설비공사	0
			공조설비공사	722,620
			계	9,803,738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4,726,274
			정보통신공사	6,695,893
			소방설비공사	4,349,565
			승강기공사	2,149,896
			계	17,921,628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0
			이윤	0
			계	0
	간접비		설계비	2,071,774
			감리비	0
			일반분양시설 경비	2,921,020
			분담금 및 부담금	1,586,361
			보상비	0
			기타 사업비성 경비	438,893
			계	7,018,048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7,922,453
합계				139,188,900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제일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29,835,541,038	29,727,048,161	29,944,033,914

7.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가산비									
	계	기간 이자	흙막이 공사비	기타 비용	계	건축구조 형식 가산비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친환경 주택건설 추가비용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지하 주차장 층고증가 추가비용
								홈 네트워크	에어컨 냉매 배관	초고속 특등급	기계 환기 설비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금액	4,613,917	443,490	1,801,323	2,369,104	8,443,382	-	843,415	2,837,676	933,848	-	2,010,062	1,240,704	46,825	530,852

8.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구분	사업주체		
상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이수건설 주식회사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4(송월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반포동)
사업자등록번호	129-82-10595	104-81-31309	206-81-40254

■ 시공업체 등

구분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상호	금호산업 주식회사	이수건설 주식회사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자체감리
사업자등록번호	104-81-31309	206-81-40254		

9.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경산하양 금호어울림 주택전시관



〔코로나 19관련 안내사항〕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경산하양 금호어울림 주택전시관은 사전 예약자(일일 출입인원 제한)에 한해 계약 전 주택전시관 관람을 시행할 예정으로 관람을 대체하여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운영하며,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통하여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당첨자에 한해 계약 전 주택전시관 관람을 시행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공지 할 예정입니다. (입장 시에는 전신소독, 마스크착용, 체온체크 등 예방절차 후 입장 가능하며, 마스크 미착용 및 체온체크시 37.5도가 넘을 경우 입장이 불가합니다.)

※ 청약당첨자의 주택전시관 방문은 날짜 및 시간을 예약 후 입장이 가능하며,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하고, 주택전시관 체류시간 등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시적 과도한 집객방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주택전시관(PC·모바일) 및 분양문의

■ 사이버 주택전시관 : www.hykhapt.com
■ 위치안내 :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35-5번지
■ 금호어울림 주택전시관 : ☎ 053-811-0626 (평일 : 10:00 ~ 18:0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